



제 424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료의 재검사 기간을 「행정기본법」에 따라 정비〉
■ 김태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168호)

2025. 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사료의 재검사 기간을 「행정기본법」에 따라 정비	2
가.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3
나. 검토의견	3
1) 입법 배경 및 필요성	3
2) 사료의 재검사 기간 정비	5
3) 부칙	9
[참고자료]	11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태선의원 등 14인
2. 발 의 일 : 2025. 3. 20.
3. 회 부 일 : 2025. 3.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의신청 제도는 행정심판·행정소송과 같은 불복 절차 이전에 국민이 행정청에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을 주장하여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행정기본법」은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마련하여 이의신청 청구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행정청 처리기간 및 연장기간은 각각 14일과 10일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법에서는 이의신청에 해당되지만 ‘재심사’, ‘재검사’, ‘재심’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행정기본법」 규정과 다르게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짧게 정하거나 처리기간·연장기간을 길게 정하여 국민 권리구제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리기간·연장기간에 관한 규정을 생략하여 국민 혼란을 초래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에 개별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행정기본법」 내용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 실효성 제고 및 실질적인 국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3조).

Ⅲ. 검토의견

1. 사료의 재검사 기간을 「행정기본법」에 따라 정비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사료검사 실시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재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기간을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현행 10일) 이내로 연장하고, 농식품부장관 등의 재검사 여부 결정 통보 기간을 재검사 의뢰일로부터 14일 이내로 명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3조(사료의 재검사) ① (생략)	제23조(사료의 재검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그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농림축산식품부장관</u> 또는 시·도지사에게 재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 ----- ----- ----- ----- <u>검사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u> ----- -----.
③ 제2항에 따른 재검사의 의뢰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u>해당</u>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③ ----- ----- ----- ----- ----- <u>재검사를 의뢰받은 날부터 14일 이내</u>

현행	개정안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④ (생략)	에 해당----- -----.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검사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가.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사료검사는 사료 품질관리를 위해 사료성분, 안전성 등을 검사하여 사료 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사료검사 지연 시 사료 내 유해물질 오염여부 등에 대한 적시 확인이 불가능해지고, 생산·유통·공급 차질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 유지가 필요함.

나. 검토의견

1) 제안 배경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행정상 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그 처분청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제기하여 스스로 처분을 수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간이한 방식의 구제절차로, 쟁송에 대한 부담 없이 국민의 손쉬운 권익구제를 도모하고 행정청도 효율적으로 자신의 처분을 시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¹⁾

1) “행정기본법상 국민권리구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령정비 방안 연구”(법제처, 2024. 11.)

「행정기본법」에 따르면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함.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도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음.²⁾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 기간은 국민의 권리구제 기회 보장 및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정한 기간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맞추어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참고로, 이와 동일한 취지로 김태선의원이 대표발의한 5건의 개정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정비 관련 개정안]

개 정 안	내 용	현 행 (하위법령)	개 정
농산물직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재심사 의뢰 기간	7일	30일
	재심사 결과 통보 기간	재심사 완료 후 7일	14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갱신 재심사 의뢰 기간	7일	30일
	재심사 여부 통보 기간	7일	7일
	재심사 결과 통보 기간	2개월	지체 없이

2)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 정 안	내 용	현 행 (하위법령)	개 정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료의 재검사 의뢰 기간	10일	30일
	재검사 여부 결정 통보 기간	-	14일
	재검사 결과 통보 기간	20일	행정기본법 적용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갱신·유효기간 연장 재심사 의뢰 기간	7일	30일
	재심사 여부 결정 통보 기간	7일	7일
	재심사 결과 통보 기간	10일	행정기본법 (단서 제외)
	시료의 재검사 의뢰 기간	7일	30일
	재검사 여부 결정 통보 기간	7일	7일
	재검사 결과 통보 기간	7일	행정기본법 (단서 제외)
친환경농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식품등의 인증·갱신·유효기간 연장 재심사 의뢰 기간	7일	30일
	재심사 여부 결정 통보 기간	7일	7일
	재심사 결과 통보 기간	10일	행정기본법 (단서 제외)
	유기농업자재 공시 재심사 의뢰 기간	7일	30일
	재심사 여부 통보 기간	10일	-
	재심사 결과 통보 기간	3개월	행정기본법 적용

※ 자료: 관련 법률 및 개정안 내용 재구성

2) 사료의 재검사 기간 정비

「사료관리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사료의 안정성 확보와 품질관리를 위해 직권 또는 수요자의 요청으로 사료공정에 적합한지 여부 등에 대한 사료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법 제20조).

농식품부장관 등은 검사 결과 해당 사료가 사료공정에 위반되거나 유해물질이 포함된 경우 등에는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법 제23조제1항).

통보받은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령 제32조제2항)에 재검사를 의뢰할 수 있음(법 제23조제3항).

재검사를 의뢰받은 행정청은 재검사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며(법 제23조제3항), 재검사를 결정한 경우 재검사를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함(부령 제32조제4항).

[사료의 재검사 관련 규정]

사료관리법	사료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사료검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료의 수요자로부터 제2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한 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사료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사료의 재검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1조에 따른 사료검사 결과 해당 사료가 사료공정에 위반되거나 제2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검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제조업	제32조(사료의 재검사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료검사 결과를 사료검정기관의 사료검정기록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자 또는 수입업자는 그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재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검사의 의뢰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사료에 대하여 재검사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22조에 따른 사료검정기관에 재검정을 실시하게 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검정수수료 및 보세창고료 등 재검사를 실시함에 따르는 비용은 재검사를 요청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부담한다.	있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사료 재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재검사를 의뢰해야 한다. 1. 사료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정증명서 2. 검정에 사용된 시료의 채취·분석 방법 등에 관한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재검사를 의뢰받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 4. (생략)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재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개정안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재검사를 의뢰할 수 있는 기간을 「행정기본법」에 맞추어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연장하고, 농식품부장관 등의 재검사 여부 결정 통보 기간을 재검사를 의뢰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명시하려는 것임.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청의 부당한 처리 지연을 방지하며,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재검사 의뢰 기간의 연장(10일→30일)과 관련하여, 사료검사는 사료공정 또는 성분등록 적정 여부, 유해물질 잔류나 질병 병원체 오염 여부 등을 검사하여 사료 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사료검사가 지연되면 사료 내 유해물질 등에 대한 적시 확인이 어려워진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실무상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

또한,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입장에서도 장기 보관에 따른 원료 품질 저하, 하역 보관료 추가 부담 등의 문제가 있어 이의신청 기간 확대가 반드시 국민에게 유리하지는 않을 수도 있음.

둘째, 개정안에 따른 재검사 여부 결정의 통보 기간(14일)이 실무에 비해 과도하게 긴 측면이 있음.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재검사 여부 결정은 1~2일 내에 이루어짐.³⁾

[재검사 결과 통보 기간 비교]

현행	재검사 여부 결정 통보(1~2일)	*법적 근거는 별도로 없음	
	재검사 결과 통보 (20일)		
개정안	재검사 여부 결정 통보 (14일)		
	재검사 결과 통보 (14일)	(10일 연장 가능)	

※ 자료: 현행 법령 및 개정안 내용 재구성

3) <참고자료> 실무상 사료 검사·재검사 소요기간

셋째, 개정안 제36조제4항에 따르면 재심사 결과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의뢰일로부터 14일 이내(10일 연장 가능)에 통보되어야 하나, 재검사 여부 결정→시료 재채취→재검정 실시→재검정 결과 통보→위반 여부 판단 등 필수적인 내부 행정 절차에 최소 16~18일이 소요되어⁴⁾ 통지 기간의 연장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현행법령에서는 재검사 여부 결정의 통보 기간과 재검사 결과의 통보 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재검사 의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재검사 결과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부령 제32조제4항), 현행 법령상 처리 기간(20일)이 개정안에 따른 처리 기간(14일+10일)에 비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행정 실무와 국민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 여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3) 부칙

현 행	개 정 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검사를 의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 <참고자료> 실무상 사료 검사·재검사 소요기간

개정안은 이 법 시행 이후 재검사를 의뢰하는 경우부터 개정규정이 적용되도록 함. 이 법 시행 전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도 개정규정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취지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14

참고

실무상 사료 검사·재검사 소요기간

단 계	내 용	소요기간
❖ 사료 검사		
① 검사 요청 (검사기관→검정기관)	▪ (요청) 사료검사기관*, 사료수요자(제조업자, 수입업자) * 농식품부(농관원), 지자체(시·도) ▪ (목적) 사료 안전성 확보, 품질관리, 수요자 요청 ▪ (근거) 법 제21조①항, 규칙 제30조	
↓		
② 시료 채취 (검사기관)	▪ (절차)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 ▪ (근거) 법 제21조②항, 사료검사기준 제31조	1~2일
↓		
③ 검정 실시 (검정기관)	▪ (절차) 사료공정*에서 정하는 방법 * 사료의 제조·사용 및 보존방법에 관한 기준과 사료의 성분에 관한 규격 ▪ (처리) 검정을 의뢰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사료검정기관 : 시료 접수일, 수입사료검정기관 : 시료채취일+2일 ▪ (근거) 법 제21조①항, 사료검사기준 제31조	10일
↓		
④ 검정결과 통보 (검정기관→검사기관)	▪ (처리) 검정결과 검정대장 기록 및 사료검정기록서 통보 ▪ (근거) 규칙 제30조③항, 사료검사기준 제31조	1일
↓		
⑤ 검사결과 통보 (검사기관→수검자)	▪ (절차) 등록선분과의 상이 여부, 안전성관련 성분 위배여부 판정 - 검정성분의 허용오차적용범위 적용 후 최종 검정치와의 상이 여부, 유해 사료 해당여부 등 판단하여 수검자에게 통보 ▪ (처리) 사료검정기록서 접수 후 3일 이내 ▪ (근거) 법 제23조①항, 규칙 제32조①항, 사료검사기준 제20조, 제22조①항	3일
↓		

단 계	내 용	소요기간
❖ 사료 재검사		
⑥ 재검사 의뢰 (수검자→검사기관)	▪ (절차) 검사결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사료 재검사 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사료검사기관에 의뢰 ▪ (조건) 시료 채취·취급 위반, 검정방법 위반, 오차범위 2배 이내, 재가공 사료, 사료시험검사기관 증명서와 상이 등 ▪ (근거) 법 제23조②항, 규칙 제32조②항 사료검사기준 제22조③항	
↓		
⑦ 재검사 여부 결정 (검사기관→사료수요자)	▪ (절차) 사료검사기관은 재검사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재검사 여부를 결정하고 사료수요자에게 통보 ▪ (근거) 법 제23조③항, 규칙 제32조③항, 사료검사기준 제22조⑤항	1~2일
↓		
⑧ 시료 재채취 (검사기관)	▪ (절차) 시료 채취·취급 위반, 재가공 사료에 해당하여 재검사요청을 한 경우 시료 재채취 후 검정 의뢰 ▪ (근거) 사료검사기준 제22조⑤항	1~2일
↓		
⑨ 재검정 실시 (검정기관)	▪ (절차) 사료공정*에서 정하는 방법 * 사료의 제조·사용 및 보존방법에 관한 기준과 사료의 성분에 관한 규격 ▪ (처리) 검정을 의뢰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사료검정기관 : 시료 접수일, 수입사료검정기관 : 시료재채취일+2일 ▪ (근거) 법 제23조④항, 사료검사기준 제31조	7일
↓		
㉔ 재검정 결과 통보 (검정기관→검사기관)	▪ (처리) 검정결과 검정대장 기록 및 사료검정기록서 통보 ▪ (근거) 규칙 제30조③항, 사료검사기준 제31조	1일
↓		
㉔ 위반 여부 판단 (검사기관)	▪ (절차) 검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재검사 결과에 대해 위반여부 최종 판단 ▪ (처리) 검정결과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 (근거) 사료검사기준 제22조⑦항	5일
↓		
㉔ 재검사 결과 통보 (검사기관→수검자)	▪ (절차) 재검정 결과 위반여부 최종 판단 후 수검자에게 통보 ▪ (근거) 법 제23조④항, 규칙 제32조④항, 사료검사기준 제22조⑦항	1일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 제출(2025. 4. 17.)